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6. 4. 27. (수)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 광 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6년 4월 18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3. 제정 이유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민주 시민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원칙(안 제4조)

라. 교육의 내용(안 제5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7조~안 제9조)

사. 이수증 발급(안 제 10조)

아. 표창(안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교육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한 것과 안 제7조~제9조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